



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

(2026년 1월 기준)

구 분			1급	2급	3급	4급	5급	인지지원
시설 급여	노인요양시설	일반형	93,070	86,340	81,540	81,540	81,540	
	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	일반형	74,590	69,210	63,800	63,800	63,800	
재가 급여	재가급여 월 한도액		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	복지용구 연 한도액		1,600,000					
	단기보호(1일당)		74,060	68,580	63,350	61,680	60,000	
	주·야간보호 (1일당)	라-1 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41,820	38,720	35,740	34,120	32,490	32,490
		라-2 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56,060	51,930	47,940	46,300	44,650	44,650
		라-3 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69,730	64,590	59,640	58,010	56,360	56,360
		라-4 10시간 이상 ~ 13시간 미만	76,820	71,160	65,750	64,090	62,460	56,360
		라-5 13시간 초과	82,370	76,310	70,500	68,860	67,240	56,360
	방문요양 (방문당)	가-1 30분 이상	17,450원					
		가-2 60분 이상	25,320원					
		가-3 90분 이상	34,120원					
		가-4 120분 이상	43,430원					
		가-5 150분 이상	50,640원					
		가-6 180분 이상	57,020원					
		가-7 210분 이상	63,530원					
		가-8 240분 이상	70,080원					
	방문간호 (방문당)	다-1 30분 미만	42,880원					
		다-2 30분 이상 ~ 60분 미만	53,770원					
		다-3 60분 이상	64,690원					
	방문목욕 (방문당)	나-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내 목욕)	88,990원					
		나-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내 목욕)	80,230원					
		나-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50,100 원					

-
1.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 2.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 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 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
통보 의무
 5.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
관한 원상회복 의무

달리 할 수 있다

-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
-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.
 - 1.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
 - 2.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
- ⑤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,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 (계약해지)

-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.
-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
 - 2.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 - 3.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
 - 4.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
 - 5. 이용자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
 - 6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제4조 (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권리)

-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 - 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- 2.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 - 3.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
 - 4.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- 5.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 - 6.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- 7.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- 8.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
제5조 (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의무)

제4장 이용계약

제1조 (급여계약 등)

-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'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'(이하 "계약"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-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,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.
 1. 계약 당사자
 2. 계약기간
 3.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 4.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
-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

제2조 (계약기간)

-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